

제 목	국 문	고액진료비 환자의 특성연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중심으로-		
	영 문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 Cost Patients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Government Aid System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문옥륜, 강선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Ok Ryun Moon, Sun Hee Kang School of Public Health, S.N.U.		
분 야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비	발 표 자	강 선 희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1993 년 11 월			

1. 연구 목적

중앙정부의 보건예산증에서 의료보장 부분의 지출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지출의 대부분은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의 자료로서 이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소수의 고액진료비 환자의 특성을 지역의료보험과 의료보호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해 봄으로써 추후 의료비 절감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료보장(의료보험및 의료보호)별로 환자군별 특성을 살펴본다.
- 둘째, 의료보장(의료보험및 의료보호)별로 고액의료비 지출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및 이용자료

- 연구대상 : 전국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 대상인구
- 이용자료 : 1992.1.1-6.31까지 의료보험 연합회에 제출한 상기 연구대상자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

나. 용어의 정의

- 고액진료비 환자 : 각 환자군별로 지난 6개월 간 총진료비가 큰 순서로 하여 상위 15%에 해당하는 진료비 사용환자를 의미하거나 또는 그에 따라 총진료비가 6개월간에 150만원을 넘는 사람
- 장기입원자 : 계속 재원일수가 30일 이상되는 입원환자
- 단기입원자 : 계속 재원일수가 6일이내의 입원환자
- 중기입원자 : 계속 재원일수가 6일이상 30일 이내의 입원환자
- 재입원환자 : 조사대상 기간에 두번이상 반복하여 입원한 환자
- 암환자 : 진단명이 암질환으로 되어 악성암으로 되어 있는 환자
- 노인환자 : 연령이 60세 이상되는 입원환자

3. 연구결과

1) 고액진료비 환자의 비율: 의료보호 환자의 5%가 총 보험진료비의 31.6%를 사용하고 의료보험 환자의 5%는 총 보호진료비의 34.2%를 사용함으로써 소수의 (5%) 고액진료비 환자가 총의료비의 약 1/3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점은 1%정도의 환자가 15%정도의 의료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환자에게 의료비가 집중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50만원이상 의료비 사용자 비율: 의료보호 환자는 50%정도가, 의료보험 환자는 30%정도가 50만원 이상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환자 1인당으로는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은 의료보호 환자가 더 많은 의료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고액진료비 환자군 : 의료보장에 관계없이 고액진료비 환자는 주로 장기입원 환자와 재입원환자였다.

4) 의료비 지출의 특성 : 의료보호 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가 의료보험 환자보다 20,000원이상 적었고 평균재원일수는 17일, 평균연령은 비슷하였다. 이러한 의료보호 환자의 입원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보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상병명 : 악성신생물, 순환기계질환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의료보장별로는 의료보험환자에게는 담석증과 추간원판 장애가 많았고 의료보호 환자에게는 폐결핵과 천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6) 조기 재입원 경향: 의료보장중별에 관계없이 전체환자의 30% 정도가 2주이내의 조기 재입원을 하였다. 조기 재입원의 원인에 대하여는 많은 분석이 필요하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차이에 따른 행태의 차이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7) 재입원 형태 : 동일상병에 대하여 의료보호 환자가 동일병원으로 재입원하는 비율이 높으며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 하더라도 동일 대진료권으로의 재입원율이 의료보험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보험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의료보호의 진료권 제한이 보험의 그것보다 더 엄격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